

## 【제한조건】

### 1. 영업구역 제한

-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진흥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및 기타법령 등에 따른 제한 및 통제구역,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 등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경주시 연안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내 모든 도서,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경상북도 공고 제2000-296호 【낚시어선업 선외기 설치 어선의 규모 공고】
  - 운항구역 : 0.5톤 이상 3톤 미만 어선은 기선으로부터 1마일 이내  
3.0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기선으로부터 2마일 이내  
5.0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기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

### 2. 영업시간 제한

-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4:00~20:00까지로 한다.
-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 및 레이다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.

### 3. 기타제한

-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·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하여야 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타 법에 의해 제한 또는 통제된 구역으로 낚시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낚시어선업자가 경상북도 내 타 시·군의 관할수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당 구역 관할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낚시어선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비치하여 영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,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- 낚시어선 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, 기타 준수사항은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다.

## 【낚시어선승객 준수사항】

1.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이 후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(선원)의 지도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.
2.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전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 후 승선하여야 한다.
3.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하고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,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지시에 따라야 한다.
4.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대피를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승선 및 회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.
5.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
  - 낚시어선에서 음주행위 및 위험물의 반입 및 운송, 기타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
  -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류(油類), 분뇨, 미끼 및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
  -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된 수산동물의 포획금지기간어종 및 체장 등을 위반하여 포획하는 행위
6.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행위 중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.